

교직원 보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정관 제47조, 제 84조 및 교직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 2장과 5장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총장 및 교원의 경우 본봉, 직급연구비, 직원의 경우 본봉, 직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2. 25>

② "보수"라 함은 봉급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수월액"이라 함은 연간 지급된 총 보수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승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5>

⑥ "승급"이라 함은 직급별로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 2. 25]

⑦ "연봉"이라 함은 계약에 의한 연간급여 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8. 2. 25]

⑧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 2. 25]

제 2 장 봉 급

제4조 (봉급자료의 채택) 공무원 본봉표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기본 기준표를 채택한다.

제5조 (봉급) ① 호봉제 교직원의 봉급은 별표1에 의거 지급하고,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계약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② 교원(연봉제 교원 제외)에게는 직급연구비를, 직원에게는 직급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 3 장 연봉 및 호봉책정

제6조 (연봉의 책정) 연봉제로 채용된 교직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은 별도의 연봉제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8. 2. 25>

제6조의2 (초임호봉의 책정)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교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총장이 정한다.
-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9급 4호봉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03.01]

제7조 삭제<2008. 2. 25>

제8조 (평가승봉) 교직원의 호봉간 승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직원의 호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평가에 의하여 승봉한다. [신설 2008. 2. 25]

제9조 삭제<2008. 2. 25>

제10조 (특별승봉 및 연봉추가지원) ① 본 대학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 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인사권자는 1호봉을 특별승봉 시키거나, 1호봉에 준하는 금액을 연봉에 특별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5>

- ② 재직 중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특별 승봉시키거나, 연봉에 특별추가 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5]

제 4 장 보 수

제11조 (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지급일) ① 보수 지급일은 봉급은 매월 25일, 수당은 매월 10일로 하되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5>

-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계산) 신규채용,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보수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함)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된 교직원이 기간 중 면직되거나 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14조 (휴직기간의 처우) 정관 제42조에 해당하는 휴직 교직원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5>

- 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100%, 공무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80%의 봉급을 발령 당일부터 지급한다.
- ② 1항의 봉급은 공무상 질병은 월봉급에 상여금, 정근수당을 포함하고, 공무외적

질병은 월봉급에 상여금을 포함한다.

③ 일반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15조 삭제 <2008. 2. 25>

제16조 삭제 <2008. 2. 25>

제17조 (겸직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단, 재원을 달리하는 부속, 부설, 위탁기관의 직을 겸직시에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18조 (명예교수 및 비정년교원의 보수) 명예교수 및 비정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5>

제19조 (해외파견 및 연구년의 보수) 해외파견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인사권자가 정하고, 연구년 교원의 보수는 연구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5>

제20조 (면직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임시직의 보수)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임시직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5>

제22조 (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근무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 장 수 당

제23조 (수당의 지급) 호봉제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봉제의 경우 연봉외급여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계약에 명시된 수당을 이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5>

제24조 삭제 <2008. 2. 25>

제25조 삭제 <2008. 2. 25>

제26조 삭제 <2008. 2. 25>

제27조 (보직수당) 보직을 맡은 교직원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28조 (상여금) 교직원(연봉제 교직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봉급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상여금 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신규임용 및 면직, 복직시 상여금 지급 기간 중 보수지급 일수(제13조에 의하

여 휴직 또는 면직되어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된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가 15일 미만인 자.

3. 기타 공무원 수당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 제한 대상자.

제29조 (정근수당) ① 교직원(연봉제교직원 제외)에게는 봉급을 기준으로 매 학년도 3월과 9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1. 3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3월 15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가운데 2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으로 1년미만의 경우 월봉급액의 20%에서 시작하여 1년경과시 마다 20%씩 가산하여 지급하되 200%를 넘지 못한다.

2. 9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9월 15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가운데 8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으로 1년미만의 경우 월봉급액의 50%에서 시작하여 1년경과시 마다 5%씩 가산하여 지급하되 100%를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근속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직원의 정근 수당은 3월 15일과 9월 15일 현재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교직원의 근속 연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 인사규정에 정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및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항의 근속연수라 함은 퇴직 후 재임용자는 퇴직 전 근속연수는 제외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 수당은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 처분을(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제외)받은 교직원에게는 3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전년도 9월 15일부터 익년 3월 14일 사이의 처분 기간을 적용하고 9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당해년도 3월 15일부터 9월 14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1. 정직 1월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감봉 1월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 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0조 (가족수당) 교직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외)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 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2. 25>

제31조 (급식비) 전 교직원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2조 삭제 <2012. 9. 21.>

제33조 (시간외 근무수당) ①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②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법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시점(2006.7.1)부터 3년간은 최초4시간분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4조 (특수근무수당) 특수한 기술 및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8. 2. 25]

제35조 (자녀교육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외)에게 자녀교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5]

제36조 (연가보상비) ① 직원에게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기준일을 대학교의 명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② 연가보상비는 1일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7조 (체력단련비)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급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월 봉급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제38조 (자가운전 보조비) 교직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9조 (강사료)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8. 2. 25>

제40조 (졸업논문 지도 및 심사비) 졸업논문 지도 와 심사시,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41조 (정년퇴직자의 포상) ① 정년으로 퇴직하는 교직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의 재직중 업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
2. 재직중 대학발전에 공헌이 큰자

②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우는 포상 시행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2. 25]

제42조 (장기근속 포상) 장기 근속 시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08. 2. 25., 2011. 4. 21.>

1. 10년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패와 봉급의 50% 지급
2. 15년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패와 봉급의 75% 지급
3.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패와 봉급의 100% 지급
4. 연봉제 교직원의 봉급기준액은 호봉제 교직원에 준한다.

제43조 (국내외 출장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5>

제44조 (기타 제수당)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개정 2008. 2. 25>

제 6 장 퇴 직 금

제45조 (지급대상) ① 임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으로 1년 이상 된 자.

② 정식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형편상 연금에 가입되지 못한 교직원으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 된 경우.

③ 이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퇴

직금을 지급한다.

제46조 (명예퇴직)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대상,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2. 25]

제46조의2 (희망퇴직) ① 본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희망퇴직의 대상,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2. 25]

제 7 장 보 칙

제47조 (타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49조 삭제 <2008. 2. 25>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1968년 6월 25일 제정
1969년 3월 20일 개정
1977년 3월 31일 개정
1983년 3월 3일 개정
1984년 12월 20일 개정
1993년 4월 1일 개정
1994년 1월 28일 개정
1995년 3월 6일 개정
1996년 2월 27일 개정
1997년 2월 20일 개정
1997년 8월 27일 개정
1998년 5월 7일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 ③ (평가승봉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의 평가를 통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